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정비〉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226호)

2026.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교정시설·유치장에 유치된 사람에 대한 서류 송달 ..... | 2 |
| 2.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지명권자 변경 .....          | 4 |
| 3. 압수물건의 인계 대상 변경 .....             | 5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6. 9. 9.
3. 회부연월일 : 2026. 9. 1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 Ⅲ. 검토의견

#### 1. 교정시설·유치장에 유치된 사람에 대한 서류 송달(안 제28조제5항)

현행법은 지방세 관련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서류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를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경우로 확대하고, 송달받는 사람도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생략)                                                                                            |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u>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u> | ⑤ -----<br>----- <u>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u> -----<br>-----<br>---- <u>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u> -----.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정 및 10. 2. 시행 예정)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에 유치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1)</sup>.

개정안은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등 경찰서 외의 수사기관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 대해서도 지방세 관련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송달 대상자가 수용된 기관에 관계없이 원활하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유치장)** ① 중대범죄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수사청에 유치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장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유치장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수사청에 인접한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해당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교정시설의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2.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지명권자 변경(안 제113조)

현행법은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하여, 일정한 경우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지명권자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지방검찰청</u>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br>-----<br>----- <u>지</u><br><u>방공소청장</u> -----<br>-----<br>-----<br>-----. |
|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 1. 2. (현행과 같음)                                                                                      |
|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

개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됨에 따라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지명권자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기관 및 권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정비로 보임.

### 3. 압수물건의 인계 대상 변경(안 제125조제1항)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으면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압수물건의 인계 대상에서 검사를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br>-----<br>-----<br>----- <u>사법경찰관</u>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 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 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반영하여, 범칙사건 고발에 수반되는 압수물건을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같은 조 제2항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체계에 따른다면 제2항의 인계대상에서도 검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125조제2항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압수한 물건을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어려워 제115조제4항<sup>2)</sup>에 따라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경우 그 보관증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제1항과 압수물건의 보관 형태만 달리할 뿐, 범칙사건 고발에 따른 압수물건의 인계 절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

2) 「지방세기본법」

**제115조(압수·수색영장)** ④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압수한 물건을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